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1. 22 선고 2023가단12457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환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안익성

변론 종결 2024. 8. 23.

판결 선고 2024. 11. 2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C와 피고 사이에 2021. 7. 22. 체결된 D(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을 197,5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9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8.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의 촉탁으로 2020. 11. 5. C가 원고로부터 3억 6천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20. 12. 15.부터 2025. 11. 15.까지 매월 15일에 600만 원씩 변제하되 1회라도 이를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E 증서 2020년 제00644호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나. C는 상호를 'D', 사업장소재지를 '시흥시 F, G호'로 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위 주소지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

다. 그러던 중 C는 2021. 7. 22. D의 사업장소재지를 '화성시 H'로 변경하였다.

라. 그리고 같은 날 D의 기존 사업장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I'로 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는데, 피고는 C의 아들로 D에서 C로부터 급여를 받으며 일하고 있었다.

마.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불상의 시점에 D의 변경된 사업장소재지로 등록된 '화성시 H' 현장을 촬영한 사진에서 실제 D이 운영되고 있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바. C는 2022년 2월 및 3월경 원고와 통화하면서 '아들 명의로 사업자를 내고 청년자금을 신청했다. 그걸로 전액 다 갚아버릴라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하였다.

사. I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지기 얼마 전인 2021. 7. 12. D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3천만 원이 송금되었고, 위 3천만 원은 곧바로 I의 사업장소재지로 등록 될 예정으로 당시 D의 사업장소재지인 '시흥시 F, G호'의 임대인 주식회사 J로 이체되었다. 그리고 2021. 8. 4. 및 2021. 9. 1. D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각 330만 원이 송금되고 위 각 330만 원은 곧바로 주식회사 J로 이체되었다.

아. C는 2021. 1. 19. 주식회사 K와 사이에 위 회사로부터 CNC원통연삭기(규격 Ø 800×4500)를 5억 2,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기계제작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였는데, 2021. 6. 15. 위 회사와 피고 명의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기계제작매매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금 1억 원은 기존에 C가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C는 매수인을 피고로 한 위 2021. 6. 15.자 기계제작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도 2021. 7. 23., 같은 해 10. 5. 같은 해 10. 14. 3회에 걸쳐 위 회사에 합계 12,957,000원을 송금하였다. 자. 그리고 C는 2021. 12. 8. 위 기계가 '시흥시 F, G호'로 입고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원고에게 전송하고,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24. 1. 18. L과 대화중에는 '자기 명의로는 대출이 나오지 않아 아들 명의로 위 기계를 구입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차. 한편 C는 피고 명의로 I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이후 위 L과 거래하면서 I에서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다. C는 2023. 5. 26. L에게

'대표님제가그날대표님한테약속했드시벌어서갑아드리고일먼저해드린다고지장까지치어드렸는데지금통장이모
1) '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카. C는 2024. 1. 18.경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이 된(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이용하였다.

타. 2021. 8. 16.자로 I을 공급자로, M 주식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합계금액 158,840,000원(= 공급가액 144,400,000원 + 세액 14,44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생되었는데, 그중 5천만 원은 2021. 6. 4. C에게 입금되었고, 나머지 108,840,000원이 2021. 9. 3. 및 2021. 9. 30. 2회로 나뉘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파. I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지기 전 D이 거래했던 거래상대방들과 I이 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이후 I이 거래한 거래상대방이 상당부분 중첩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 갑 제7, 10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내지 19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7, 갑 제2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기초사실을 바탕으로 I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2021. 7. 22. C와 피고 사이에 D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이 묵시적으로 체결되었다고 전제하고, 위 영업양도계약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나타난 I에 대한 사업자등록 전, 후의 사정이나 C와 피고의 관계 등은 피고가 C로부터 D의 영업을 양수하여 실사업주로서 I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C가 피고의 명의만을 차용하여 형식적으로 I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쳐놓고는 실제로는 C가 D과 I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실사업주로서 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²⁾을 추단케 하는 사정들로 판단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피고에게 D의 영업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C와 피고 사이에 D에 대한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법인격부인론 유추적용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이 실시한 이른바 '법인격부인론'을 유추적용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C의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이론은 실질적인 채무자가 형식적인 명의상 채무자를 내세워 채무를 면탈하려 할 때 실질적인 채무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이론으로서 원고가 전제하는 바와 같이 C가 형식적으로 피고를 내세워 채무를 면탈하려 하는 경우라면 피고 명의로 발생한 채무의 이행을 C에게 명하는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역으로 C 명의로 발생한 채무의 이행을 피고에게 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영업양수인으로서의 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C로부터 D에 대한 영업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D의 영업상 채무로 피고가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C와 피고 사이에 D에 대한 영업양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또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정희철

1) '대표님. 제가 그 날 대표님한테 약속했듯이 벌어서 갚아드리고 일 먼저 해드린다고 지장까지 찍어드렸는데 지금 통장이 묶여서 벌어서 갚는 일밖에 없고 아들 이름으로 버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로 이해된다.

2)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역시 내심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원고는 C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I의 영업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곧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집행기관이 형식상 피고 명의로 된 재산임을 이유로 그 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다투는 절차에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